

1. 개정이유

고용·산재 보험료 등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관련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현행 제48조제1항 삭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에 대해 ‘규제 비해당’으로 심사함에 따라 관련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

나.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실제 예술인·노무제공자 업무처리 기관으로 관련 서식의 수·발신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에 대한 민원인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2025. 3. 18. ~ 4. 2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
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에 다음을 추가한다.

유의사항
17. 고용보험 “성립일” 란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근로자 최초 고용일)을 적고,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18. 산재보험 “성립일” 란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근로자 최초 고용일), 농업·임업(별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은 5명 이상된 날을 적고,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
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하고, 뒤쪽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1. 고용보험 “성립일” 란은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입니다.
2. 산재보험 “성립일” 란은 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입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
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

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하고, 뒤쪽의 “고용보험(www.ei.go.kr)에서”를 “고용24(www.work24.go.kr)에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1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3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 1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5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6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7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8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뒤쪽의 “고용보험(www.ei.go.kr)에서”를 “고용24(www.work24.go.kr)에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0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1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4서식 앞쪽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